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군내 농업인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가의 소득증대 및 영농편의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대상(안 제4조)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

나. 임대계약 및 취소(안 제6조)

-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 단, 농업용 이외의 사용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등은 취소

다. 임대료(안 제7조)

- 임대료는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별표」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
- 임대료는 대여 전 납부, 운반비용, 유류 등은 임차인 부담

라. 임대료의 환불(안 제9조)

-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농기계 출고 전 계약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불

마. 임차인의 책임(안 제12조)

-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변상 또는 원상회복
-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07. 9. 15 - 10. 4(20일간) - 의견없음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한다.

②농기계 임대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한다.

③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4조(임대대상) ①임대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으로 한다.

②농지규모가 적은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와 재해 등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를 우선한다.

제5조(관리요원 배치) ①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 및 지게차운전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로 2명이상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관리요원은 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농기계의 취급조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임대계약 및 취소) ①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재해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임대료) ①임대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제시한 농기계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수리비에 대하여 예상 임대일수를 적용 「별표」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한다.

②임대료 납부는 농기계 대여 전까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후 예정된 입고일자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1일당 임대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농기계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8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

제9조(임대료의 환불) ①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예정된 입고일자보다 조기에 입고한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다만, 출고당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출고일 임대료의 2분의 1 과 잔여일은 전액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0조(양도 및 대여 금지) 임대한 농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농기계의 반환) ①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차 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임차인의 책임) ①임차인은 임대기간중 계약조건외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정 될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③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일 임대료	$(\text{감가상각비}^1 + \text{자본이자}^2 + \text{수리비}^3) \div \text{예상 임대일수}$
항 목 별 산정기준	1. 감가상각비 = $(\text{구입가격} - \text{폐기가격}) \div \text{내용년수}$ 2. 자본이자 = $(\text{구입가격} + \text{폐기가격}) \div 2 \times \text{연 이율}$ 3. 수 리 비 = $\text{구입가격} \times \text{수리비계수}$

※ 비고

1. 예상 임대일수는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2. 내용년수 : 농림사업시행지침(농업공학연구소) 및 조달청 내용년수 등을 준용한다.
3. 폐기가격 : 경운기·관리기·이앙기·콤바인 25%, 트랙터 30%, 작업기 등 기타 5%
4. 연 이 율 : 5%
5. 수리비계수 : 6%

관계법령 발취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촉진의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림사업시행지침(제2권)」

「농기계임대사업(자율)」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를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구입, 임대료징수 및 내용연수 경과 후 대체농기계 구입 등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확보하는 등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추진체계>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임대, 임대료징수 및 관리, 사후관리, 대체 농기계 구입 등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 관리한다.

○ 임대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구입 가격, 내구년수, 임대기간 및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산정하되, 임대료 적립금을 이용 대체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임대료 납입방법 및 관리 등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